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6월 14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56호

###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일부 개정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조의2(근로시간 단축)**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복무규정 제 23조(근무시간)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